

第118回(臨時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1號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日 時 2002年2月18日(月) 11時25分

議事日程(第1次本會議)

1. 第118回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2.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

附議된案件

1. 第118回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3面
2.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 3面

(11時25分 開議)

○議長 金以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黃義振 事務局長!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事務局長 黃義振 事務局長 黃義振입니다. 제11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李東奎議員 외 7인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1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은 모두 10건으로서 2001년 12월 3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 1월 22일 서울특별시종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등관리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 1월 29일 李東奎議員 외 6인으로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생활체육진흥지원조례(안)과 2002년 2월 5일 종로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종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종로구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창신 제6주택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과 승인 제3주택개발구역

변경지정(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안), 도시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어 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고용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12월 12일 시민행정위원회에 회부되었고 나머지 안건은 2002년 2월 6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1월 29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鄭興鎭 前 區廳長의 사임통지서를 접수하였으며, 또한 2002년 2월 9일 구청장 사임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00조 제5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의 2 제4항에 의한 盧張鐸 副區廳長의 區廳長 權限代行에 대한 통보가 2002년 2월 14일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黃義振 事務局長! 수고하셨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安載弘議員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安載弘議員!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安載弘議員 安載弘議員입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신청해서 5분발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조례적인 귀속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 구가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국·과에서는 이에 대해서 대응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각 동마다 하나 또는 두개의 공영주차장 갖기 사업을 시작하자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3·4분기부터 종로구 전역에 거주자우선주차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면도로에 설치된 거주자우선주차제의 공간은 어차피 한정될 수밖에 없어서 주민이 요구하는 주차공간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날로 증가되는 주차장의 주차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보다는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종로구의 특성상 골목길의 주차문제는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웃이 친한 이웃이 아니라 나쁜 이웃으로 느껴지는 일이 주차의 문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 종로구는 공영주차장의 확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꾸준히 주차공간의 확보를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법을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도로의 진입폭에 따라서 주차장법이 적용되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장의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의 과정에서 토지매입과 관련한 감정가 내지 공시지가의 적용 문제 등은 현실적으로 토지매입을 어렵게 하고 있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법의 엄격한 적용은 공영주차장의 증설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차장의 신설과 확대를 위해서 자치구의 조례로 만들어놓은 주차장특별회계는 현실적으로 주차장의 신설과 확대를 위한 조례인지 아니면 그 종사원의 인건비와 교통표지판 설치 등 부대사업을 위한 조례인지 해당과도 혼동해서 운용되고 있어서 주차장특별회계의 조례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진정한 욕구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걸핏하면 법령의 규정을 들어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한심한 생각을 가지고 날로 증가하는 주차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주장하는 각 동마다 1 또는 2 이상의 주차장 갖기 운동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 할

것입니다. 주차장 대상부지 매입방법을 개선해서라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불과 3~4년 내에 또는 그 이전에 주차장의 문제로 심각한 문제에 빠질 것입니다. 근본적인 주차문제의 해결 없이는 주민간의 다툼이 점차 심각해질 것이고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단속은 주민들의 불만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특별회계의 예산은 오직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재원으로만 끊임없이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주차대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행의 주차단속의 목적이 주민들에게 올바른 주차방법을 통해서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단속인지 아니면 주차위반과태료를 징수하기 위한 단속인지 확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 내 주민의 이용이 많은 은행이나 시장, 공공기관, 대중이용시설 등에는 항상 주차수요가 많으나 그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곳은 주차단속완화 지역으로 해서 피크타임에 이용객이 많은 시간은 단속을 완화하고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자율 통제케 해서 주민불편을 완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李炯述議員님께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신설학교 또는 기존 학교의 학교운동장을 중장기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자치구와 관련 교육청은 이러한 학교 주차장의 신설방안도 같이 연구해서 시행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의 엄격한 적용은 법치주의의 기본원리라고 생각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어서 어차피 자치구의 행정이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늘리기 위한 그러한 행정서비스의 구현정신이라면 주차장을 확보해나가는 데 주차장법상 도로의 진입로 폭이 좁다고 해서 주차장의 설치를 반대한다면 이것은 다시 제고되어야 할 그러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공영주차장의 확대를 위한 사업에만 쓰여져서 주민의 주차편의를 확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본래의 특별회계 취지와 다르게 사용된다면 주차장특별회계는 폐지되어 일반회계로 편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차피 그것은 시민의 세금이나 준조세로 조성되어 주차장의 확충에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경영주차장이 계속 확대되어 1동마다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주차장이 확보될 때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은 해소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머지 않은 2년 내지 5년 내에 부닥치게 될 주차대란을 해소시키는 일일 것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以煥 安載弘議員! 수고하셨습니다.

1. 第118會 鐘路區議會 臨時會 會期決定의 件

(11時36分)

○議長 金以煥 의사일정 제1항 제11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1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2년 2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參照)

議事日程

(運營委員會)

(이상 1건 附錄에 실음)

2. 會議錄 署名議員 選出의 件

○議長 金以煥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1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千相旭議員과 玄壽漢議員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2월 19일부터 2월 21일까지 3일간 본회의

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議員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는 2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員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11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時38分 散會)

○出席議員 18人

- | | | | |
|-----|-----|-----|-----|
| 金以煥 | 鄭泰淳 | 李憲九 | 吳錦南 |
| 千相旭 | 玄壽漢 | 安載弘 | 丁炳煥 |
| 劉燦鍾 | 李炯述 | 洪承台 | 金福同 |
| 朴鍾植 | 吳弼根 | 洪起瑞 | 李東奎 |
| 金正大 | 宣相善 | | |

[The page contains extremely faint and illegible text, likely bleed-through from the reverse side of the document. The text is too light to transcribe accurately.]